

의안번호	제 430
의 결 연 월 일	2012년 12월 일 (제316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12월 일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0
----------	-----

발의연월일 : 2012년 12월 일

발의자 : 김도경 · 정현 · 황규철 · 권기수 ·  
윤성옥 · 유완백 · 이수완 의원 (7명)

## 1. 제안 이유

-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사항에 '귀농 및 이주여성' 포함 (안 13조)
- 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1조, 안 제9조 등)

## 3.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
-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지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

지사는 귀농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귀농·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이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8조(생략)	제2조 ~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6. <u>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u>	6. <u>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 지원</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10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 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u>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u>	1. <u>귀농 ·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u>
2. <u>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u>	2. <u>귀농 ·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u>

현 행	개 정 안
3. <u>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u>	3. <u>귀농·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u>
4. <u>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u>	4. <u>귀농·이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령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

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